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
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, 선발시험위원회의 개의(開議)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며, 종전에는 선발시험위원회가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던 것을 응시자가 1명밖에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재공고를 반복하지 않고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공직 내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이 초과한 후에도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

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·의결의 공정(公正)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은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한다.

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

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응시자가 1명 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하야야”를 “해야”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, “아니하고”를 “않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선발시험을 공고한 개방형직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개방형직위 회) ① · ② (생 략)	선발시험위원	제6조(개방형직위 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선발시험위원	
<u><신 설></u>		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 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		
		1.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		
		2.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 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		
<u><신 설></u>		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 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 · 의결의 공 정(公正)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은 심 의 ·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.		
<u><신 설></u>		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 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		

<신 설>	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<신 설>	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)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	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<단서 신설>	제7조(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 제9조(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) ① (생 략)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	다만, 응시자가 1명 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 제9조(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해야 ----- -----

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
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
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
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
수 있다. <단서 신설>

----- 않는 -----

----- 않고 -----

----- . 다만, 임기제공무원의
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
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
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
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
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
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2